





## 목차●●●●●

### 1. 세무 및 세무행정 <3-5 페이지>

- 1.1 확장투자에 대한 법인세 관련 정책에 대한 공문번호 36452/CT-TTHT
- 1.2 투자지역 이전에 따른 법인세 혜택에 대한 공문번호 2009/TCT-CS
- 1.3 수출서비스에 관한 매입부가세 환급에 대한 공문번호 21863/CT-TTHT
- 1.4 파생상품에 적용되는 세무정책에 대한 공문번호 1959/TCT-DNL
- 1.5 구글, 페이스북 광고와 관련된 비용에 대한 공문번호 45551/CT-TTHT
- 1.6 예금이자 및 환율차익/환율재평가이익에 적용되는 법인세 원천징수에 대한 공문번호 45559/CT-TTHT
- 1.7 세무행정법 번호 38/2019/QH14

### 2. 관세 <5-6 페이지>

- 2.1 수입관세 면제에 대한 공문번호 4138/TCHQ-TXNK
- 2.2 수출가공기업(EPE)의 폐기물 처리에 대한 공문번호 1447/GSQL-GQ2

### 3. 노동 <6 페이지>

- 3.1 직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에 대한 공문번호 320/QHLDTL-CSLD

### 4. 기타 <6-7 페이지>

- 4.1 FDI 기업의 비즈니스라인 추가 절차에 대한 공문번호 3337/BKHDT-DTNN
- 4.2 FDI 기업의 투자지 변경 신청에 대한 공문번호 3686/BKHDT-DTNN
- 4.3 외국인 개인의 오피스텔 임대에 대한 공문번호 131/BXD-QLN



# S&S AUDITING AND CONSULTING COMPANY

8<sup>th</sup> Floor, 41 Nguyen Thi Minh Khai Street, District 1, Ho Chi Minh City

Tel: 028-3910.4996 – 3910.4997

Email: [SAMUEL230@HANMAIL.NET](mailto:SAMUEL230@HANMAIL.NET)

Fax: 028-3910.4998

[SAMUEL230@SSAUDIT.COM](mailto:SAMUEL230@SSAUDIT.COM)

## 1.1 확장투자에 대한 법인세 관련 정책에 대한 공문번호 36452/CT-TTHT

산업단지 내의 회사가 고정자산 증설에 투자하였으며 그 내용이 시행규칙 96/2015/TT-BTC 제 10 조 제 4 절의 조건 중 하나에 부합하는 경우 이는 초기 투자의 세제혜택을 그대로 적용받거나 신규투자에 따른 세제감면/면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.

- ✓ 추가투자한 고정자산의 역사적원가가 200 억동 이상이거나 100 억 이상 (사회경제적 낙후지역에 해당)
- ✓ 투자 전과 비교하여 고정자산 원가가 20% 이상 증가
- ✓ 투자 전과 비교하여 생산량이 20% 이상 증가

회사가 동일지역(산업단지) 내의 신규투자에 따른 세제감면/면제 혜택을 선택할 경우, 고정자산 증설 이후 발생한 수익에 대하여 2 년간 법인세 면제, 이후 4 년간 법인세 50%감면이 적용됩니다. (시행규칙 151 의 제 6 조)

세제면제, 감면기간은 투자 확장기간이 종료하여 이익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기산됩니다. 단 3 년간 과세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, 그 다음 해인 네 번째 연도부터는 세제혜택 개시연도로 자동 기산됩니다.

## 1.2 투자지역 이전에 따른 법인세 혜택에 대한 공문번호 2009/TCT-CS

세무총국에 따르면 투자법 및 법인세법은 기업이 투자지 이전 (변경)의 경우에 대한 세제혜택 이슈를 규정하지 않습니다. 2014 년 1 월 1 일 이전까지 세제혜택은 각 기업수준에서 적용되는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. 그러나 그 이후부터는 기업의 개별 투자수준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간주되며 이는 기업이 특정 투자프로젝트 실행을 위하여 법인격을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.

따라서 행정상으로는 주사무실 주소 변경만을 신청하였으나 실질 투자지역이 변경될 경우(다른 성/도시에서 사업이 행해지거나 기존 지역에서의 사업을 종료하는 경우) 시행규칙 96/2015/TT-BTC 에 따른 세제혜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.

시행규칙 96 제 10 조 제 3 절에 따라 사업등록증이나 투자등록증상 내용이 변경되나 세제혜택 적용과 관련된 사항에는 변경이 없을 경우, 해당 기업은 확장투자분에 대하여 잔여기간 세제혜택이 적용됩니다.

## 1.3 수출서비스에 관한 매입부가세 환급에 대한 공문번호 21863/CT-TTHT

시행규칙 219/2013/TT-BTC 제 9 조 제 1 절 점 dd 에 따라, 보세 지역에서의 건설 및 설치의 수출서비스로 간주됩니다. 따라서 어느 한 기업이 보세 지역에 있는 타기업에 건설 및 설치서비스 제공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는 부가세 영세율이 적용됩니다. (관련 조건 만족 시)

더불어, 누적 매입부가세가 3 억동 이상이며 시행규칙 219 제 16 조 조건을 만족할 경우, 위 수출서비스의 경우도 매입부가세 환급 가능 거래로 간주됩니다.



# S&S AUDITING AND CONSULTING COMPANY

8<sup>th</sup> Floor, 41 Nguyen Thi Minh Khai Street, District 1, Ho Chi Minh City

Tel: 028-3910.4996 – 3910.4997

Email: [SAMUEL230@HANMAIL.NET](mailto:SAMUEL230@HANMAIL.NET)

Fax: 028-3910.4998

[SAMUEL230@SSAUDIT.COM](mailto:SAMUEL230@SSAUDIT.COM)

## 1.4 파생상품에 적용되는 세무정책에 대한 공문번호 1959/TCT-DNL

세무총국에 따르면 외환 스왑 및 기간 관련 규정(Term-based)이 있는 외환거래 Term-Based foreign currency trading 은 파생상품 거래이므로 시행규칙 219/2013/TT-BTC 제 4 조 제 8 절 점 g 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입니다. (점 g: 콜옵션, 풋옵션, 선도, 선물 등)

외국인계약자가 스왑 및 기간에 근거한 외환거래를 통하여 수입이 발생한 경우 법인세만 납부하게 되며 부가가치세는 면제됩니다. 외국인계약자세에 대한 시행규칙 103 은 상기를 포함한 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법인세 규정이 상세하지 않은 바 해당 시행규칙 제 7 조 제 3 절 및 제 13 조 제 1 절 점 a 의 일반규정은 과세소득 결정에만 적용됩니다.

외국인계약자의 파생상품거래 과세소득 결정의 시기는 발생 건마다 적용됩니다. (법인세법 14/2008/QH12 제 5 조 제 2 절)

## 1.5 구글, 페이스북 광고와 관련된 비용에 대한 공문번호 45551/CT-TTHT

기업이 구글, 페이스북에 광고를 게시할 경우 해당 기업은 시행규칙 103/2014/TT-BTC 제 11 조, 12 조, 13 조에 따라 해외기업(구글, 페이스북)을 대신하여 세금을 원천징수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.

상기 광고비용이 생산 및 경영활동에 공하며, 시행규칙 96 /2015/TT-BTC 제 4 조에 규정된 인보이스 및 각종 서류 구비조건을 만족 시,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. 그러나 공급자 해외기업이 베트남 내 인보이스 발급하지 않을 경우 기업은 세금 신고 및 납부 서류를 구비하여야 합니다.

(상기와 같이 외국인계약자에게 지급한 금액의 손금산입을 위한 구비서류 예)

- ✓ 계약서, 서비스 합의서 (실제 서비스가 제공/완료되었음을 명시하는 서류)
- ✓ 상업 인보이스 (Commercial Invoice)
- ✓ 은행 납부 서류 등

## 1.6 예금이자 및 환율차익/환율 재평가이익에 적용되는 법인세 원천징수에 대한 공문번호 45559/CT-TTHT

시행규칙 103/2014/TT-BTC 제 7 조 제 3 절에 따르면 외국인계약자에게 발생한 예금이자 및 기타수익은 베트남 법인세 법이 적용됩니다. 또한 환율차익(실현이익 및 미실현이익을 모두 포함)은 시행규칙 96/2015/TT-BTC 제 5 조 제 2 절에 따라 기타수익(기업의 주요 사업, 생산과 무관한 경우)으로 분류됩니다.

따라서 외국인계약자가 베트남 내에서의 외환거래로 인하여 상기 두 가지 수익이 발생한 경우 법인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.

이 경우 외국인계약자는 수익에 비율에 상응하여 법인세를 납부하게 되며 그 절차 및 신고서류는 시행규칙 156/2013/TT-BTC 제 20 조 제 4 절 점 c 을 따릅니다.



# S&S AUDITING AND CONSULTING COMPANY

8<sup>th</sup> Floor, 41 Nguyen Thi Minh Khai Street, District 1, Ho Chi Minh City

Tel: 028-3910.4996 – 3910.4997

Email: [SAMUEL230@HANMAIL.NET](mailto:SAMUEL230@HANMAIL.NET)

Fax: 028-3910.4998

[SAMUEL230@SSAUDIT.COM](mailto:SAMUEL230@SSAUDIT.COM)

## 1.7 세무행정법 번호 38/2019/QH14

2019 년 6 월 13 일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국회는 세무행정법 38/2019/QH14 를 통과시켰습니다. 2019 년도 세무행정법은 납세자 권리 확장에 대한 주목할만한 지침들을 포함하며, 특히 제 16 조에는 기존 법에 신규 규정을 아래와 같이 추가 제시합니다.

- ✓ 세무조사 및 감사 등의 경우 관련기관으로부터 세무 의무에 관한 서류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음
- ✓ 세무 관련 법에 따라 세금 환급 등을 향유 및 환급 기한, 미납부 세금, 환급불가 세금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.
- ✓ 세무기관에 전송한 모든 전자문서를 검색 및 열람 가능할 것
- ✓ 세무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거래 시 전자바우처를 사용 가능할 것
- ✓ 납세자가 규정상 안내서류를 따르고, 세무서 및 유관기관의 납부의무 세액 판단과 관련된 결정문에 따른 경우, 세무행정 위반에 대하여 처벌하거나 지연납부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

개인소득세법과 관련하여, 베트남 국적을 가진 모든 개인은 개인식별번호(PIN)을 발급받은 시점 해당부터 해당 PIN 이 PIT CODE 를 대체합니다. (제 35 조 제 7 점)

본 법안의 인보이스, 전자문서에 관한 지침은 2022 년 7 월 1 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나, 정부는 기관 및 개인이 그 이전 관련 내용을 적용 시작할 것을 장려합니다. 본 법안은 2020 년 7 월 1 일부터 발효됩니다.

## 2.1 수입관세 면제에 대한 공문번호 4138/TCHQ-TXNK

본 공문은 외국 당사자의 지정에 따른 On-The-Spot 수출용 상품의 수출 및 임가공 목적으로 수입된 자재, 가공용 수입품, 수출용 제품 생산에 적용되는 관세 정책에 대한 통일된 지침을 제공합니다.

본 공문에 따라, 베트남 국내기업(수출전문기업)이 해외기업을 위하여 on-the-spot 수출목적의 상품을 임가공, 제조하였으며, 외국기업의 지시에 따라 해당 상품을 다른 베트남 기업에 운송하였다면 원자재 및 소모품 등에 대한 수입관세가 면제됨을 확인하였습니다. (시행령 134/2016/ND-CP)

*예: ABC(빈증소재) 기업이 D(한국 소재)에 카톤박스를 판매계약 체결. D 는 ABC 로 하여금 계약서상 물품을 임가공계약을 맺은 E 에게 동나이지역으로 운송할 것으로 지정함. ABC 는 계약상으로는 D 에게 판매하였으나, 운송은 동나이로 하였으므로 이는 국경을 넘어간 수출은 아니나, 내수수출로 통관을 거쳐야 함.*

본 공문은 2018 년 10 월 5 일자 공문번호 5826/TCHQ-TXNK 제 2 점의 내용을 대체합니다.



# S&S AUDITING AND CONSULTING COMPANY

8<sup>th</sup> Floor, 41 Nguyen Thi Minh Khai Street, District 1, Ho Chi Minh City

Tel: 028-3910.4996 – 3910.4997

Email: [SAMUEL230@HANMAIL.NET](mailto:SAMUEL230@HANMAIL.NET)

Fax: 028-3910.4998

[SAMUEL230@SSAUDIT.COM](mailto:SAMUEL230@SSAUDIT.COM)

## 2.2 수출가공기업(EPE)의 폐기물 처리에 대한 공문번호 1447/GSQL-GQ2

시행령 69/2018/ND-CP 제 44 조 제 4 절에 의거, 스크랩/ 폐기물의 파기는 천연자원 환경부의 서면 허가에 따라 관세청의 감독하에서만 허용됩니다. 수출가공기업은 폐기된 물품을 취급 시, 환경보호법 준수 외에도 세관 조사 기록을 제출하기 위해 처분 절차를 세부적으로 기록해야 합니다. (시행규칙 39/2018/TT-BTC 제 1 조 제 51 절).

"폐기물 (폐기된 물품)", "스크랩"의 개념은 환경 보호법의 지침 자료에 구체적이고 정형화하여 규정되어 있습니다. 따라서 "폐기물"이란 제조, 거래, 서비스, 일상생활 등의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물질을 말합니다(환경 보호법 제 3 조 제 12 절).

"스크랩"이란 제조 또는 소비 과정에서 폐기된 물질과 제품으로부터 채취, 분류 및 선정된 다른 제조 공정의 재료로 재사용할 수 있는 물질을 말합니다(환경 보호법 55/2014/QH13 제 3 조)

## 3.1 직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에 대한 공문번호 320/QHDTL-CSLD

노동법 10/2012/QH13 제 36 조 제 7 절에 의거, 회사가 사업을 종료할 시(즉 기업이 해산할 때) 노동계약은 종료됩니다.

노동법 10/2012/QH13 제 248 조 제 1 절/ 제 2 절에 의거, 근로계약이 노동법 제 36 조 제 7 절에 따라 종료되었을 경우 고용주는 12 개월 이상 정규 근무한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. 지급금액은 각 근무 연도의 1 개월치 월급의 절반입니다.

이에 따라 회사가 해산(사업 종료)할 경우, 근로자는 실업 수당 대신 퇴직금을 지급받게 됩니다.

## 4.1 외국투자법인의 비즈니스라인 추가 절차에 대한 공문번호 3337/BKHDT-DTNN

시행령 118/2015/ND-CP 제 45 조 제 3 절에 의거, 외국인 투자 법인은 투자 프로젝트가 없어도 사업 등록 기관에서 기업 등록 정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.

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 법인은 사업 라인 추가 등록 시 투자 프로젝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. (즉, IRC 는 별도의 변경 절차는 요하지 않으며, 이는 IRC 의 유무와는 독립적입니다)

단, 외국인 투자 법인의 사업 라인 추가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투자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.



# S&S AUDITING AND CONSULTING COMPANY

8<sup>th</sup> Floor, 41 Nguyen Thi Minh Khai Street, District 1, Ho Chi Minh City

Tel: 028-3910.4996 – 3910.4997

Email: [SAMUEL230@HANMAIL.NET](mailto:SAMUEL230@HANMAIL.NET)

Fax: 028-3910.4998

[SAMUEL230@SSAUDIT.COM](mailto:SAMUEL230@SSAUDIT.COM)

## 4.2 외국투자법인의 주소 변경 신청에 대한 공문번호 3686/BKHDT-DTNN

외국인 투자자가 투자 프로젝트 시행장소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 시행령 118/2015/ND-CP 제 33 조 제 2 절에 따라 변경 신청서를 투자등록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. 또한 서면 설명서 혹은 투자법 제 33 조 제 1 절 점 b, c, d, dd, e, g 에 규정된 수정사항 관련된 자료를 필히 첨부해야 합니다.

투자법 (Point dd Clause 1 Article 33)에 따르면, 투자프로젝트에 대해 정부가 토지를 분배하거나 리스, 혹은 토지사용목적 변경할 필요가 없을 경우, 투자자는 토지 리스 계약서 사본 혹은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 해당 부지를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다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
## 4.3 외국인 개인의 오피스텔 임대에 대한 공문번호 131/BXD-QLN

부동산 거래법 66/2014/QH13 제 14 조 제 2 절에 의거, 외국 법인은 부동산을 실제 사용 목적으로 임대할 수 있으며, 주택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대로 매입, 임대, 리스가 가능합니다.

따라서 외국인은 베트남에서 오피스텔(căn hộ văn phòng kết hợp lưu trú=오피스와 주거용도가 혼합된 개념)을 임대할 수 있습니다.

주택법 65/2014/QH13 제 16 조 제 11 절은 "주거용도가 아닌 목적의 \*아파트(căn hộ chung cư) 사용"을 금지하고 있으나, 이는 아파트에만 적용되는 내용입니다.

부동산 거래법 제 10 조 제 2 절과 시행령 76/2015/ND-CP 제 5 조 제 7 절에 의거, 자가용 오피스텔을 리스하는 개인은 법인 설립은 필요 없으나 세무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.

=====0o0=====